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29

발의연월일: 2022. 6. 30.

발 의 자:양경숙·강득구·강준현

김두관 • 박영순 • 용혜인

이동주・이병훈・이수진(비)

정성호 · 정일영 · 최기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 당액"이라 한다)이나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는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현재 벌금상당액을 현금으로만 수납하고 있어 납부의사가 있으나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 당액의 납부방법을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방법과 동일하게 하여 현금 이외에도 증권,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과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운영, 납부 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통고처분)	① ~	3	(생	제15조(통고처분)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벌금상
				당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
				수단.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
				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u>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u>
				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
				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④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통신과금서비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
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과 제4항에 따른 납부
대행기관의 지정·운영, 납부 대
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